

97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

(의안번호 제418호)

심 사 보 고 서

1997. 6.

총 무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7. 5. 13 고 성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1997. 6. 16
- 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1997. 6. 16 상임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

가. 제안이유

-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물 이전 및 소각로 설치부지 매입, 군청사부지 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함.

나. 주요골자

□ 취득대상재산

○ 쓰레기매립장 하부지역 토지매입

- 재산표시 : 삼산면 판곡리 391-2번지 외 3필지 5,168㎡
- 취득재산가액 : 62,016천원

□ 기 승인 취득대상재산 매입부지 위치변경

○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매입

- 당 초 : 고성읍 교사리 634-1번지 외 7필지 9,514㎡ 199,794천원
- 변 경 : 고성읍 덕선리 일원 9,500㎡ 207,900천원

□ 교환으로 인한 처분재산(추가분)

○ 군유지와 국유지(고성경찰서 부지)와 교환

- 재산의 표시 : 고성읍 동외리 63-12번지 2,433㎡
- 처분재산가액 : 499,225천원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쓰레기매립장내 시설물이전 및 소각로 설치부지 매입, 군청사 부지확장사업 등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'97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함은 타당하나 지역농업개발센터 매입부지에 관하여는 사전에 매입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후 부지선정치 않고 임의선정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을 발생케 한 것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보다 세심한 판단으로 사업부지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음.

4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난해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를 매입코자 계획했으나 매입못하고 있다가 왜 갑자기 또 매입코자 하는가
 - 답 : 지주가 매입토록 원했음.
- 문 :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함은 쓰레기 매립장을 확장하고자 하는것이 아닌지
 - 답 : 매립장에 있는 음식물 숙성장 및 소각로를 매입부지로 이전코자 하는 것임.
- 문 : 추가분 매입건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타진해 본적이 있는지
 - 답 : 다소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나 설득시켜 최대한 잡음이 없도록 하겠음.
- 문 : 매입후 민원해결이 안될경우 강행추진 할 것인지
 - 답 : 최대한 설득할 것임.
- 문 : 경찰서부지와 교환하고자 하는 신 경찰서부지와 의 가격차이는 없는지
 - 답 : 비슷함.
- 문 :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지도소와 가까이 있는것이 편리하지 않는지
 - 답 : 지도소 구내면 더욱 좋으나 필요한 만큼 면적이 없음.
- 문 : 당초 승인받은 후 매입치 못하고 변경코자 하는 이유는
 - 답 : 지주 몇분과 면담하는 결과 계획했던 부지가와 현저한 차이로 불응하는 상태임.
- 문 : 변경된 후보지는 거리가 멀어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을지
 - 답 : 당초 후보지와 거리차이가 거의 없고 환경적으로는 더 좋은 곳임.

5. 토 론

- 쓰레기매립장 주변 토지추가 매입에 있어 지역실정을 잘 아는 군의원과 면장에게 아무런 사전 업무 타진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계획 추진코자 함은 졸속 행정으로 향후 모든 사업계획이나 추진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지역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나 읍면장에 사전 업무협의토록 함이 바람직함.

6. 심사결과

- 1997. 6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